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2차)

개최일시	2019.1.14(월) 14:20~18:5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3명)	강미리(동아리연합회 회장), 김다연(대학원 학생회장), 김상택(기획처장), 김선우(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김세빈(사범대학 공동대표), 도재형(총무처장), 이공주복(교무처장), 이민하(학부 총학생회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준엽(관리처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한은서(학부부총학생회장)		
불참자 (0명)			
안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2019학년도 교비 예산(안),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원칙,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2019학년도 부속병원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내용	<p>■ 개회</p> <p>위원장은 총 13명의 위원 중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p> <p>■ 회의내용</p> <p>1. 회의록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1차 등심위 최종 회의록 확인 후 서명을 부탁하다. 위원들이 전원 1차 회의록에 서명하고 논의사항으로 넘어가다. <p>2. 논의사항</p> <p>가. 등심위 구성 및 운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첫 번째 안건으로 ‘19년 교비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고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를 2번 밖에 잡지 않은 것과 위원장의 일정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닌지 우려를 표하다. 졸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등심위 구성 및 운영’이 마지막 안건인데 등심위 		

자체가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등심위 운영 개선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뻔했으나 그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실무위원회나 관련 회의 자리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는 심의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비민주적인 구조로 심의를 진행하면 학생위원들이 반대를 해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지금 구성에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심의 안건은 현 규정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지금 바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고 말한다. 지난 회의에서 학교위원이 안건을 상정하라고 해서 했는데 마지막 안건에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라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지난 회의에서 다른 학교 구성이 우리 학교와 다르다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타학교 사례에 기반을 두어 우리 학교에 적용할 것이 있을지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실무위원회라고 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학생 위원과 학교 위원이 실태조사를 하는 팀을 구성해 이후 차기 처장들이 등심위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실태조사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서울 주요 사립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실태 조사하는 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실현되는 권한을 가진 논의 테이블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등심위 구성에 대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논의하는 자리는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 안건에 넣었다고 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오늘 논의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등심위를 개최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처장이 바뀌는 일정도 고려해서 다음 등심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운영이나 구성에 대한 추가 등심위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임기에 따른 보직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기가 남아 있는 관리처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을 말한다.

- 관리처장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양측 자료가 준비되고 공유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자료 조사와 별개로 추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말한다. 나중에 하자는 말은 지금껏 학교가 말한 노력하겠다는 식의 답변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이 처장이 바뀌어서 말이 바뀌거나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확실히 해달라고 말하자 총무처장은 난감하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다른 안건에 있어 의결해야 할 때 학생들은 구조를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구조에 대한 회의를 연다는 것을 논의한 후 예산 심의 및 의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지난 회의에서 16일까지는 추경예산(안), 예산(안) 및 등록금 책정 심의를 완료해야 하고, 추후에 등심위 구성에 관한 회의 개최를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학생 위원들이 추가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것을 구두 상이 아니라 논의해서 결정해달라는 것 같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이 특정 일자를 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고 1분기 이내는 어떤지 질의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분기는 너무 길고 특정 일자를 정하기 어렵다면 몇 월 몇 주차에 한다는 것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2월말이나 3월초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관리처장은 날짜를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회의록이 공개되니 차기 처장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하며 2월말이나 3월초가 괜찮은지 재확인하다.

- 관리처장이 3월 이내가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이 학교도 등심위 운영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가 회의에 임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그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말한다. 총무처장은 학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말하며 타학교 사례 중 좋은 것이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이 회의에서 등심위 구성에 대해 변동이 생기면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의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전년도 회의록에서 구조에 대한 것은 등심위가 아니라 규정위원회로 가야한다고 한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회의록 작성, 참관 등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등심위에서 의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는 등심위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등심위에서 논의하여 승인 의결된 사안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규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회의록에 기록될 것이니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제안하다.

• 합의사항

- 3월내에 등심위 구성 및 운영 개선을 다루는 등심위를 개최하기로 하다.

나. 학부 학생위원 요구안 검토

- 부총학생회장이 예산 심의 전 학생 요구안을 보면 좋겠다고 말하고 총학생회장이 위원 전체에 요구안을 배부하다.

- 부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설명하다. 첫 번째로 분반 확충, 전임교원 확보와 강사 구조조정 방지를 말하며 예산안에 시간강사로 15억 원 증액이 된 근거에 대해 질의하다. 두 번째는 실험실습비 확충 및 공개이며, 다른 학교에서도 공개하는 학교가 많고 현 상황에서는 단과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전 관련해 경비 인력 확충, 기숙사 건물 수리 등이 있으며 학생들의 관심이 많고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한다. 학생 지원 관련해서 장학금 확충, 대동제 지원금 확대, 고시반 지원을 말한다. 생활환경 개선 관련하여 학문관 냉난방, 열람실 환기, 학식 개선 등이 있으며 단과대학별 요구안도 고려할 것을 당부하다.

- 총무처장은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경우 경비 인력을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CCTV 같은 기계식 설비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경비 관련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경비 인력 확충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 없고 노조랑 이야기 해봐야 한다는 것인지 질의하자 총무처장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더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우리 학교 경비 인력은 타학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많은 편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여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많으니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 관리처장은 현재 인력 감축 없이 CCTV 등 기계식 안전 확보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총무팀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경비 인력 확충이 어려운 것인지 질의하자 총무처장이 당장 증원은 어렵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기계식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카드기인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추가 경비 확대는 쉽지 않고 타 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보안이나 안전에 유의해 운영 중이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CCTV 설치 계획이 있는지, 올해에는 얼마나 추가되었는지 질의하다. 총무처장은 계속 설치하는 중이며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상당히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있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사각지대를 파악한 것인지 질의하고, 총무처장은 작년엔 파악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기숙사가 신축건물인데 사고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보수 계획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있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보수 요청을 해 건물 조사를 완료 했으며 가장 문제인 것은 온수 배관이라고 말한다. 시공사에 요청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재정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숙사의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가 있고 학교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공사 측에서 올해 2월까지 1차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 기획처장이 별도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학생들의 요구안을 검토하고 유관부서에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관련처가 여기에 다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추경예산에서 반영하기 위해 유관 부서와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고시반 예산은 별도로 있으며, 추가적으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지만, 1억 원을 특별 예산으로 배정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이미 들었던 요구안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요구안이 여러 개라서 등심위 말고 다른 자리에서 다른 부서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고시반 지원에 관련된 정확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얼마나 증액한 것인지 질의한다.

- 기획처장은 원래 고시반 예산이 별도로 있으며 추가적으로 1억 원을 특별 예산으로 배정했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등심위 자리에 가져온 이유는 1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지 부서에 전달하는 것은 학생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필요한 것을 보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라고 등심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한다.

- 총무처장은 셔틀 손잡이 개선의 경우 작년에 알아보았는데 지금의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서 못했다고 말한다. 학식 메뉴나 가격 개선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예산안을 보면서 부족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현재 예산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요구안을 보고 설명은 가능하나 바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번 예산에 대해 각 부서에 전달해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

하다. 시설 관련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많아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 '19년 교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예산안을 설명할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19학년도 교비 예산(안)에 대해 각 수입, 지출 항목에 대해 '18학년도 추경 예산 대비 증감요인을 덧붙이며 설명하다.
- 총무처장이 학생위원들이 요구한 것처럼 시간강사료 15억 원 증액의 산출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다.
-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과의 면담에서 그 부분은 교무처에서 산출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강사법 시행이 '19년도 하반기가 예상되어 시간강사가 교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반영한 것이라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그냥 반영했다고 말하면 학생들이 알 수 없다고 지적하다.
- 총무처장은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위원장은 시간강사는 비상근이라고 말한다. 교육부에서 시행령이 나와야 하겠지만 2학기 시간 강사료는 지금과 동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방중 임금인데 방중에는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 중과 똑같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을 반영하면 강사 수를 조정하지 않아도 퇴직금이나 보험도 들어가지 않고 방학 중 임금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지난 회의에서 교과과정 개편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단대가 그런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은 교과과정은 4년 주기로 개편하며 '19년에 전반적인 검토, '19년에 새로운 교과과정을 실시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어느 단대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래에 맞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한 단대에서 교과과정 개편을 빌미로 강사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다.

- 위원장은 본부는 모르는 일이며 그런 지침이 있던 적도 없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무처 차원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자, 위원장이 해당 단대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추후 현황을 학생위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요청하다. 타 학교에서도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전임 교원에게 수업을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임교원이 추가 강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타 학교도 전임 교원이 강의를 더 맡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며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등심위 사전 요청 자료 중 시간강사 임용/해고 계획 자료에 “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수 조정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왜 쓴 것인지 질의하다.

- 위원장은 강사 수는 항상 바뀌며 일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그렇다면 왜 굳이 강사법을 언급한 것인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이 강사법에 ‘강사의 강좌 수를 일정 시간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3학점 하는 강사가 10명인데 만약 한 명당 6학점을 맡아야 한다면 강좌는 줄지 않아도 강사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교수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강의 시수와 강사 수는 별도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강사 수보다는 강의 시수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행령에 1학점씩 나눠서 했던 강사들이 매학기 3학점을 맡아야 한다면 강사 수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닌가 할까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쓴 것이라고 말하며 1학기 와 2학기 강좌 수는 다르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교무처가 강사법 시행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등심위 학생위원들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교과과정 개편 시기와 맞물려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위원들이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전달이 아니고 왜곡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생기며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해 누군가 시비를 걸며 소송 제기가 가능해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발표하는 사람은 수 년 동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정책적인 공식발표는 교무처장이 아니라 총장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극단을 생각하면 전임교원을 총원하여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게 되면 교육의 질은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현행 강사를 유지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최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다. 우리 학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은 대학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하며 기준이 다르다고 말한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속 변동이 생길 것이고 학교가 강사법 때문에 교육의 질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고 대규모의 본부 차원 규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구조조정, 해고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강사법을 악용하지 않고 시행령을 잘 따르겠다는 입장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다.

- 위원장은 시행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안 따를 수 없다고 말한다. 강사법 취지가 강사 보호인데 이걸 따르면 강사를 보호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힘든 것이냐고 질의하다.

- 관리처장은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발표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며, 법이 바뀌면 강사 수는 줄어든 수 있다고 말한다. 모든 항목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법은 지키기 어렵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제보에 따르면 강사 중에서도 불안해하는 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은 법적 절차가 있을 텐데 학교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서 강사를 보호해도 강사 개개인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불안해한다는 게 포괄적이라서 잘 모르게다며 위원장이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강사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인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강사의 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기 강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사 분이 말씀하셨고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좋은 강의가 없어진다는 불안일 수도 있고, 대형 강의화 되어 수업의 질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우리 학교는 대형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으며 교수들이 싫어한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타학교에서는 필수교양을 없애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필수교양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인데 이에 대해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은 구체적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최소한 구조조정이란 말을 쓰기 어렵다면 '시행령을 잘 따를 것이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낼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은 시행령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법을 위반했다면 법을 잘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만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당연한 것을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니 책임을 저달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표면적으로는 법을 지킬 테지만 학교들이 강의 몰아주기, 대형 강의 등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전임교원 확보율이 높다고 했는데 우리 학교는 63위로 높지 않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어디서 찾았는지 질의하고 부총학생회장은 대학알리미에서 찾았다고 말한다. 기획처장은 틀렸으며 우리 학교는 5위라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강사 수도 전국에서 5위 안이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법적 기준을 못 미친다고 말하자, 기획처장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작년기준 103%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의학계열에서만 초과해서 전임이 많고 다른 대학은 전임교원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시간 강사수가 5위라는 것은 그만큼 강사가 많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총학생회장은 대학교육연구소에 의뢰받은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인다.

	<p>- 기획처장은 교육부의 공시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말한다.</p> <p>- 총무처장은 우리 학교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지 않으며, 왜 자꾸 타 학교 사례를 가져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p> <p>- 동아리연합회장은 기사에 따르면 타 학교도 그랬듯 수입의 1% 정도를 추가 비용으로 계산한다고 말한다. 우리 학교는 6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15억 원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15억 원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한다.</p> <p>-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회에서 기획처장이 6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줄이려고 한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말한다.</p> <p>- 기획처장은 그러한 의도로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한다.</p> <p>- 총무처장은 왜 우리가 타 학교 사례를 변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총학생회장은 타 학교를 변명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다.</p> <p>-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강사법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이 12월 이고 학생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학교가 좋은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p> <p>-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불안한 게 무엇인지 질의하다.</p> <p>- 관리처장은 우리 학교는 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는 학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p> <p>- 동아리연합회장은 학생위원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는 절대 교육의 질 저하하지 않으니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말하라는 것이냐고 질의하다.</p> <p>- 위원장은 회의록을 다 볼 수 있으니 시행령을 따른다고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말한다.</p> <p>- 총무처장은 학교는 법을 따를 것이며, 학생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야함을 말한다.</p> <p>- 동아리연합회장은 예의주시 할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 질의하고 총무처장은 그것이 아니라 학생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p>
--	--

- 총학생회장은 근본적으로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법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은 교육기관인 학교가 이를 어긴다는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학교가 시행령을 준수하는 것의 여부인데 이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어렵고, 두 번째는 강사 관점에서 강사법을 도입하면서 향후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련한 사회적 문제라고 말한다.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강사 개인의 처우는 나빠질 수도 있는데 이는 학교가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까지 학교가 고려해달라는 건 사회적 담론일 수는 있지만 등심 위에서는 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학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강사법 시행을 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선전을 해도 괜찮을지 질의하다. 총무처장은 당연하다고 대답하다.

- 총학생회장은 교무처에 면담을 요청했을 때 논의할 사항이 없고 시행령 확정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학생 면담이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하다.

- 위원장은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 처장까지 약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총학생회장이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다.

- 관리처장은 이월을 떠나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추측이라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한다.

- 외부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며 제3자로 보면 학생들만큼이나 교수들도 모교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교육의 질을 절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너무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한다. 외부위원은 기부금이 많이 감소했는데 학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투자 적금 만기로 인한 10억 원의 감소 및 지출 항목에 직원 퇴직금 감소 이유와 토지매입 20억 원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퇴직금이 감소한 것은 정년 퇴임 교원 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토지매입은 매년 예산 편성 시 교지 인근 토지 매입을 위해 20억 원 정도 편성함을 말한다. '18년 당초 예산에도 20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는 8억 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한다. 기존에 퇴직충당금은 유

동부채로 설정하였으나 올해 내부감사 결과 퇴직충당금은 고정부채화하라는 의견에 따라 향후 퇴직 충당금을 고정부채로 충당하기로 하고 퇴직금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기존의 유동부채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자금 반영하였음을 답하다.

- 관리처장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명예퇴직 관련이나 연금 적용 이전 시점의 퇴직금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퇴직금과 명예퇴직 부분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다.

- 예산팀장은 기부금 수입에 대해 설명하다. 기부금 모금과 관련한 대내외 환경이 어려움을 설명하다. 우리 학교는 동창이나 외부 기부금이 들어오지만 전반적으로 여건이 어려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하다. 국고 수입의 경우 국가에서 추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시기 및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하다. 지원액 및 시기가 확정되면 추경 때 반영 계획이라고 말하다.

- 관리처장이 국고수입에 -76억 원이라고 적힌 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정해진 것은 50억 원으로 예상되며 추가 혁신사업으로 15억 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산에 반영이 어렵다고 말하다.

- 학생처장이 국고사업이 줄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학생경비이며 만약 역량강화 사업 형태로 추가 재정이 들어온다면 학생경비부터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아 약속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말하다.

- 학생처장은 학교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으며 그 예로 국가장학금 유형2의 기준이 달라져 축소되자 교내 복지장학금으로 확충한 적이 있으며 역량 강화 사업이 들어오면 학생 경비 부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등심위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며 추후에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이 기존 재정사업에 있던 것들을 조사했고 그에 따라 어떻게 반영할지 정할 것이라고 말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수익 부분에서 등록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에 비해 지출이 학생경비에서 제일 많이 감소해 짊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경비가 줄은 만큼 학생경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세부요구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학생 측 요구안 중 학생 경비에 써야 할 항목이 많은데 학생지원비의 경우 '18년도 당초에 비해 약 20억 원 이상이 감소했고 기타학생경비에도 37억 원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이전에도 학생의 요구에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학생처장 말대로 학생경비에 대한 확충이 논의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재정지원 사업은 사업의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단에서 기존사업의 성과 및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의 요구를 사업단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연구학생경비에서 연구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교외연구비 대응비 변동과 교내연구과제 종료 등의 이유임을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실험실습비가 '18년 당초에 28억 원에서 '19년에 23억 원으로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추경과 비교해 증감이 큰 수준은 아니나 실험실습비는 등록금 회계가 대부분이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경비인만큼 왜 감소했는지 질의하고 싶다고 말한다. 앞서 말한 요구안대로 학교 본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실습비 감소는 재정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사업이 종료되어 감소한 것이며, 대학의 실습비는 '18년도 추경 예산 편성 시 실습기관 실습비가 인상되지 않아 미반영 하였던 부분을 '19년도 예산 편성 시 재 반영하였기에 다시 증가하였음을 말한다. 또한 대학의 실습비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단대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교무회의 때 보고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이 보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자, 예산팀장은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실험실습비 공개와는 별도로 사용에 대한 책임을 단과대 자율로 맡기기는 하지만 승인의 절차를 거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송실대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총학생회 차원에 공개하고 고려대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고 말한다. 홍익대의 경우 규정집이 열람이 가능하며 재무에 실험실습비가 있어 확인해 보았다고 말한다. 우리 학교는 규칙집에 실험실습비 관련 부분이 없고 어떤 기준으로 사용 허가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가이드라인의 경우 요구하면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실습비 집행 지침은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근거하며,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집행지침에 공개가 어려운 내용은 없음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학생들이 실험실습비에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이유는 차등적인 등록금의 원인이 실험실습비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년도 회의에서는 차등등록금이 별도의 기준이 없고 사회적 정서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한다. 전국예술대학네트워크에서 예술대학 차등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는데 우리학교는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한다. 대학들의 차등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비율이 10% 혹은 한 자리수라는 기사를 보았다며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면 학생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험실습비 공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학교 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학생들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교무회의에서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실험실습비 집행지침을 검토하고, 지침이 없다면 안을 마련해 교무회의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차등등록금과 관련해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현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등록금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말한다. 이를 기금 및 기부금 등의 기타 재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수업 및 지원에 필요한 실습비 및 학생경비는 등록금계열 차이를 반영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수업환경에 필요한 기자재 및 계열에 따른 수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기금이 많은데 더 인출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대내외적인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사용해야 함을 말한다.

- 기획처장이 선배들이 100여 년 동안 모은 돈을 내가 학생으로 있을 때 많이 쓰자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앞으로 후배들도 써야하고 이전에 선배들이 쌓아온 것이니 선배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며 지금 학생이 최고로 많이 쓰면 좋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의 경우 세 브란스 수입이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법인을 통해 지출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돈은 기금뿐이라고 말한다. 예산도 감소하고 지출도 감소해 학교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 축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등록금을 올릴 수 없고 현실적 제약이 있으니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활용 중이라고 말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적립금임을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왜 그렇게까지 모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써야한다면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지금 가진 것을 향후 긴 시간동안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비용들이 3~4% 증가하고 최저임금 등은 10%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고민하는 것은 지금 투자하는 것들이 향후 우리 학교가 10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최소 10~20년 이후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기금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17년에 기금의 약 절반을 주식투자 했는데 이익이 0.9%인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또한 대학 적립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가 우리 학교에도 11월에 설치되었다고 확인했는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언제 개최하는지 질의하다. 시행령에는 구성원에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학생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구성했는지, 매년 등록금 수입에서 적립금을 쌓는데 왜 학생이 구성원에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기금운용심의회는 구성은 담당 부서가 아니기에 정확한 내용을 답변할 수 없음을 말한다. 등록금에서 기금적립 할 수 있는 것은 등록금 회계 감가상각비이며, 우리 학교는 현재 등록금 회계 자금부족으로 하고 있지 못함을 말한다.

- 외부위원이 지난 몇 년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2019학년도 등심위에서 처음 원금보존 기금에서 인출한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이는 그만큼 위기상황에서도 투자해야 할 것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학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절반 가까이 투자한 적 없고 훨씬 적다고 말한다. 총학생회장이 2,900억 원이라고 말하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총학생회장은 기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낸 것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본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관리처장은 그러한 방식의 투자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기획처장은 통계가 섞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기금운용심의회는 자금팀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위원 구성은 자금팀 업무임을 말한다.

- 위원장은 대학원 학생회장에게 의견이 있는지 묻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조교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는 어디에 쓰이며 왜 줄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조교 인건비는 T.A 조교의 급여임을 말하고, 조교에서 행정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었음을 말한다. 인건비 감소는 재정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것임을 말한다.

- 관리처장은 재학생 조교가 아니라 행정조교임을 말한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행정조교가 학부생을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위원장은 조교는 TA라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곧 총학생회 일정으로 나가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안건을 의결하고 다녀오면 어떻게 물어보나.

- 총학생회장은 아직 안 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총무처장이 정회만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위원장은 20분 간 정회를 선언하다.

20분간 정회 후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다.

- 위원장은 예산(안) 관련 질문을 추가로 요청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운영비 지출 항목에서 1억이 감소한 이유

를 질의하다. 예산팀장은 기관 운영비 감소이며 이 중 식당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지 않아 감소한 부분이 있음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식당 관련해서 총무처장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지만 학식에 대한 항의가 많았다고 말한다. 가격과 품질은 기본적으로 업체가 결정하지만 학교와 계약한 이상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타대에서는 단가의 몇 백억 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식권을 한꺼번에 발급 시 할인율을 조정하는 등 학교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식당운영비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식당을 만들어주는데 쓰이는 돈이 아닌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인건비가 올라 업체들이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옛날에는 임대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임대료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학교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학교는 임대업체에게 계속 단가를 낮춰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한다. 교내 식당은 최대한 단가를 낮춰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예산상 임대업체와 학생에게 모두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총액은 줄었지만 지원액은 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가 각종 부수적 지원을 늘려 학생식당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이 많다고 하다.

- 총무처장은 인건비가 감소한 것 같지만 과거에 받는 임대료를 못 받게 된 상황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운영비라는 것은 식당을 학교가 운영하지 않음으로 식자재 구입비 등이 감소한 것임을 말한다. 본교는 식당 운영을 위한 공간 및 기본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그럼에도 이전 업체에 비해 학생들이 느끼기에 안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업체가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거나 업체 변경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업체 관련해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동아리연합회장은 그것은 학생들의 일이 아니라고 반박하다.

- 총무처장은 우리 학교 식당 특징이 상당수는 기숙사에서 식사를 하고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은 적어서 업체 측에서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말한다. 방학 때는 학내 머무는 학생이 타 학교에 비해 적어 판매액을 겨우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학교가 요청한 것은 음식 개수를 늘려달라는 것이었고 과거에 비해 음식 종류는 늘었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부담이 된

다고 해서 직접 가서 먹어보고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의견을 전달했는지 묻고, 학생처장은 학생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최근 여건이 안 좋아져 업체도 어려워하고 학교도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한다.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그러나 학생들은 개선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 많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흥익대의 경우 메뉴가 하나라 그런 시스템을 우리 학교가 가져올 수 없다고 말한다. 단가 낮추기는 메뉴 통일이면 해결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가격뿐 만이 아니라 메뉴가 다양한 것도 원하고 있어 단가만 낮추면 학생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을지 우려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메뉴 다양성과 음식 질 중 어떤 것을 택할지는 수요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사람이 없는 것은 맛이 없고 비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개선을 더 해서 메뉴 개수를 줄이더라도 질을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메뉴 개수를 줄이더라도 질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지금까지도 학생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업체 선정 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준비하다 보니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등심위를 떠나서 좀 더 공식적으로 학생회가 의견을 주면 만나서 자리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업체에 직접 이야기하기보다 학교에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위원장은 예산안 관련 질의를 해달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연구협력관 예산이 164억 원인데, '18년도 추경예산에서 79억 원이 이월되었음에도 왜 65억 원이 추가로 증가했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은 당초 공사 액수보다 규모가 늘었다고 말한다. '18년에

공사 증액은 확정되었지만 '18년도에 공사가 끝나지 않아 '19년 예산에 이월금과 추가금이 생겼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무엇이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연구협력관은 공대와 IBS 연구센터에서 사용할 것임을 말한다. IBS 연구센터 연구 환경에 필요한 추가 공사 및 공대 연구실별 요청사항을 추가로 설계에 반영하였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법인전입금 예산이 작년에도 추경에 비해 4억 원만 증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올해는 왜 2억 원만 증가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법인전입금의 경우 사학연금 증가 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다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사학연금만 부담 중인데 작년 총장-중운위 간의 면담에서 총장도 법정부담금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학교는 여전히 어쩔 수 없고 회의록만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인 것인지 질의하다. 법인에게 책무를 다 하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부속병원이 초기이다 보니 법인도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말한다. 작년 회의록을 보면 법인책무성 강화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그래도 원래 부담했어야 맞는 것이고 지금까지 부담을 안한 것이라고 말한다. 작년 등심위에서도 학교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전이 있었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법인도 재정상황이 어려우며, 학교도 월금보존기금에서 인출을 시작하게 됨을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행사비가 1억 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행사비의 경우 대외협력팀에서 '19년에 후원의 밤 행사를 기획 중이며 기부금 모금 관련해 행사비가 책정되었음을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후원의 밤 규모에 대해 질의하다.

- 학생처장은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행사를 본격적으로 기

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아까 외부위원이 기부금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에서 새로운 노력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회의에서 추경예산에 집행률을 추가하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해주기로 했는데 질의가 가능한지 물어보다. 예산팀장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관리운영비에서 난방비 집행률이 56%로 매우 낮은데 냉난방비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난방비를 말하는 것이며, 시기적으로 겨울에 집행이 되는 항목임을 말한다.

- 관리처장이 집행률 기준일자가 언제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은 12월 31일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전기세는 한 달 뒤에 나와서 실제로 올해 겨울 분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다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학생경비 중 실험실습비 집행률이 78%인데 남은 비용으로 계절학기 충당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대학들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안에 소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말한다.

- 위원장은 방학 중에 3월 준비를 하기 위해 쓰는 비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고정자산이 구매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예산팀장은 고정자산도 예산집행 항목이며, 도서도 포함됨을 말한다.

- 부총학생회장은 이 또한 집행률이 낮는데 구매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전자 자료의 경우 구독계약이 학년도 말이며, 해당 부서에 확인 한 결과 2월 초까지 도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을 말한다.

-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학생위원들은 학교와 논의하면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

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이 자리가 계수조정위원회가 아니니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관리처장으로서 시설관리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요 등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자리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의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는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하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만 말하고 약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강사법, 실험실습비 등 확실하게 약속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파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찬반 의결을 어떻게 할지를 말한 것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니 의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관리처의 경우 이후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테이블을 마련할 바람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듣고 판단해서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정말 반영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왜 굳이 추경 때 수정해야 하는지 질의하다.

- 총무처장은 실무부서에서 요구안에 대해 예산 기반영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반영해야함을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학생들은 요구안을 사전에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결 진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기권을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하다.

- 위원장은 학생위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다.

- 학생위원들이 퇴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학생처장이 이후 안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질의하다.

- 총학생회장은 더 앉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서기는 계시는 것인지 질의하고, 학생위원들은 학생 담당이니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퇴장하다.

- 위원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19

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9학년도 교비 예산(안)

라.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설명하다.
- 관리처장은 잉여금 사용 방식이 사립학교 법에 따라 등심위에서 정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월금 처리기준에 따라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이 등심위의 심의절차를 준수해야함을 말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 잉여금 원칙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대학원 학생회장 총 8명이 찬성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등록금회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사고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사유에 따라 등록금회계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타이월의 경우 교육환경개선, 연구학생경비 등 교육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한다.

마.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

- 예산팀장은 학부 입학금 19%(2017학년도 입학금 기준 16% 금액) 인하와 정규등록 수업료 동결, 대학원은 입학금과 정규등록 수업료 모두 동결임을 말하다. 이어 학부의 계절학기 수업료 및 학점등록금 동결, 대학원의 연구, 논문, 교과목, 계절학기 등록금 모두 동결로 책정하였다고 설명하다.
- 대학원 학생회장은 학부 입학금이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학원 입학금 감축 계획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학부 입학금의 경우 교육부에 제출한 감축 계획에 따른 것이고, 대학원은 동결이라고 말하다.
- 위원장은 대학원 입학금 관련 교육부 지침은 없냐고 묻고 예산팀장은 없다고 말하다.
- 위원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

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 1명이 반대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19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9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학부 입학금 19%(2017학년도 입학금 기준 16% 금액)인하, 수업료 동결
-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 학부 계절학기 및 학점등록금 동결
- 대학원 계절학기 및 교과목 등록금, 연구등록금, 논문등록금 동결

바.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 위원장이 병원 관계자 3인의 입장을 요청하여 부속병원의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과장, 경리과장이 입장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다.

- 위원장이 병상이 서울병원은 2022년까지 있는데, 목동병원은 '19년 수준으로 지속된다는 것인지를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서울병원의 경우 병상추진 계획이며 목동병원의 경우 진료 실적이 좋아지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기획조정실장이 병원의 환자 수가 줄지 않으면 병상을 늘리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다.

- 위원장이 모든 병실을 다 1인실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기획예산과장이 기준은 3인실이나 가변형이기 때문에 전환 가능하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은 양병원(목동병원, 서울병원)의 총괄표 부터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양병원의 수입부 및 지출부를 설명하다.

- 관리처장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정자산 매입은 투자로 볼 수 있지만, 고정자산이라는 것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처럼 보여서 차입금 대부

분이 예상 적자에 근접하다고 이해되고, 유동부채는 미리 잡는 것이 아니라 리스비용 처리하여 당해 연도 소진이 되는 것인지 질의하자, 경리과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은 차입금이 100억 원이면 이를 경상적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하는지 질의하다.

- 경리과장이 자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 회계처리만 한다고 답하다.

- 위원장이 전기요금의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병상이 축소되나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관리유지비가 줄지 않으며,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다고 답하다.

- 위원장은 병동공간을 활용하면 수입이 생겨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법 개정에 따라 병상당 1m 간격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600베드로 병상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이 병실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병실 당 베드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주로 4인 병실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은 병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침대 수가 줄어들지만 관리비가 비례하지 않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은 유동부채의 리스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지, 첫해에만 부담이 큰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목동병원의 경우 6~70억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서울병원의 경우 개원과 관련하여 11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말한다. 향후 환자수가 증가하거나 수술 등이 활성화 되면 서울병원의 리스임차료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목동병원 예산편성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다.

- 관리처장은 균등분할 상환구조인지 초회에 많이 상환하고 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경리과장은 원금과 이자 비율이 다르지만 5년 정도로 거의 균등상

환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의료원 기부금 수익은 의과대학 발전기금과 별도인지 질의하자, 경리과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기부금 수입의 적립, 인출 및 적립용처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이 부분은 당해 연도 예상기부금 수입이라고 답하다.

- 위원장이 목동병원이 잘 운영될 때의 점유율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85% 정도임을 말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예상보다 환자가 늘어나 병상가동률이 85% 정도 되면 확장계획이 있다고 답하다. 85%가 가동되지 않는데 미리 병상을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 기획조정실장이 현재 목동 병상 가동률이 85%이고, 100%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분만실 등의 빈 병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85%만 되어도 바로 입원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서울병원의 예산이 1,900억 원 정도인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160억 원이면 전체 수입대비 최소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환계획을 질의하다.

- 경리과장이 5년 거치 20년 상환계획이라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목동병원의 차입금이 전액 서울병원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경리과장이 그렇다고 답하다.

- 외부 위원이 목동병원과 서울병원 합쳐서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조정실장이 목동병원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2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다. 또한 새병원 개원으로 인력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인건비 비율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답하다.

- 총무처장이 사무직 아웃소싱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조정실장이 아웃소싱에 대하여 병원 노동조합이 전체적인 아웃소싱에 반대했던 것이고, 이후 병원과 타협해서 70% 아웃소싱을 진행하기로 했

다고 답하다.

- 외부 위원이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서울병원 관리운영비로 지불되며, 원무수납과 기능원 업무라고 답하다.

- 외부 위원이 서울병원 의사의 수가 수익 달성에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조정실장이 교원은 3월에 주로 총원할 수 있으며 9월에 일부 총원 할 수도 있겠지만 의대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교원을 500베드로 맞췄으나 현재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가 없다고 말한다. 의사 인력은 목동병원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일반직에도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고 경리과장이 있다고 답하다.

- 기획조정실장이 새로운 병원 운영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획하였으며, 병상가동률은 목동병원의 80%로 예상하였다고 말한다.

- 기획예산과장이 목동병원의 인건비 중 경력직이 많기 때문에 서울병원으로의 전보를 통한 인건비 축소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이 비전임 교원의 인건비가 일반직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이 그렇다고 답하고, 위원장이 비전임 교원 외에 의료원 자체에서 고용하는 의사직이 다 포함된 것 같다고 말한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의 '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기획처장, 관리처장, 총무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명이 찬성하고 대학원 학생회장이 1명이 기권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부속병원회계의 '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의결사항

- 2019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 폐회

-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19년 1월 14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공주복	이공주복	위 원	이민하	이민하
	위 원	강미리	강미리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김다연	김다연	위 원	이준엽	이준엽
	위 원	김상택	김상택	위 원	최성희	최성희
	위 원	김선우	김선우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김세빈	김세빈	위 원	한은서	한은서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작 성 자	총학생회장 이민하 이민하					